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2.

황 국 주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황국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2호 현행 위원회 명칭인 ‘기획재경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제4호 ‘도시환경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 안 제3조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 및 정비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134
----------	----------

발의연월일: 2025. 12. 9.

발 의 자: 황국주, 박종길, 도하석,
장호섭, 고명욱, 이영빈,
권숙자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재경위원회’ 를 ‘기획행정위원회’ 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 ‘도시환경위원회’ 를 ‘경제도시위원회’ 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안 제3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경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환경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경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전략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증진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문화교통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환경국 사무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를 “경제환경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기획재경위원회</u> 8명 이내</p> <p>3. (생략)</p> <p>4. <u>도시환경위원회</u> 8명 이내</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기획재경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기획경제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생략)</p> <p>3. <u>복지문화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복지증진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행정위원회</u> -----</p> <p>3. (현행과 같음)</p> <p>4. <u>경제도시위원회</u> -----</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행정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기획전략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복지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문화교통국</u> ----- ----- -----</p>

다. (생략)

4. 도시환경위원회

가. 문화환경국 사무 중 교통
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
과, 기후환경과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나. (생략)

다. (현행과 같음)

4.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

나.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